

의안 번호	2534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5. 12. 5.(금)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2. 5.(금)
-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8.(목)

## 2. 제안이유

- 2025.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 위탁사무 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및 보충교육 실시, 교육비용 징수 등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
- 2026년 소요예산 : 없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li> <li>○ 해당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성 확보</li> </ul>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li> </ul>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관리 및 교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 확보에 용이</li> </ul>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인 실적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li> </ul>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및 위탁·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li> </ul>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li> </ul>

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5.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10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0월 ~ 11월
- 지정기관 선정 : 10월 ~ 11월
- 지정협약 체결 : 12월

## 6. 검토의견

- 본 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이 202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교육기관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기간은 2025. 12. 31.자로 종료되므로 2026. 1. 1.자로 재위탁 하기 위해서는 2026. 1. 1.의 30일 전인 2025. 12. 1.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회에 동의안은 12. 5.일자로 제출되었음.
- 또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수탁기관 모집 및 접수, 심의, 선정 등으로 3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2025. 12. 1. 훨씬 이전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및 접수, 심의, 지정기관 선정까지

완료되었고 12월에 수탁기관과 협약체결만 남겨둔 상황임.

- 이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